

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김동욱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- 「청년기본법」 개정('23. 9. 22. 시행)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청년 의무 위촉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, 띄어쓰기, 약칭 등 일부 조문의 수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.

□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청년기본법령에 따라 위원회 설치·운영 시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의 비율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하고,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10분의 3 이상으로 하며,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-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